

GCMS Plus 개별규정 (서울지점) (GCMS Plus Local Rules for Seoul Branch)

I. 서비스 규정 (Terms and Conditions/サービス規定)

GCMS Plus Terms and Conditions 은 아래의 한국어 규정이 적용된다.

The following Korean text shall apply as the authentic provisions of GCMS Plus Terms and Conditions.

GCMS Plus Terms and Conditions については、以下のハンゲルによる規定が正本として適用される。

GCMS Plus 기본계약서(「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은행이 이용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기본계약서에서 정의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 1 조 (조회서비스)

- 1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은행은 이용회사에 대해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대상 계좌 및 기타 정보에 대해 아래의 서비스(「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계좌정보 조회서비스

- ② 타발송금도착·입금 안내 조회서비스

- ③ 거래잔액 조회서비스

- ④ 계산서 조회서비스

- ⑤ Outward 송금계산서 조회서비스

2 이용회사는 컴퓨터 처리상의 제약 및 기타 이유로 은행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공된 계좌정보가 반드시 제공하는 시점의 최신 정보가 아님을 양해한다.

3 이용회사는 조회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회사의 계좌 및 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회사를 통하여) 거래지점에 직접 조회한다.

제 2 조 (송금서비스)

- 1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서 송금서비스를 선택하고 서비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은행은 이용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상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송금 및 기타 자금이동(「송금 등」)에 관한 서비스(「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 2 이용회사 또는 관련회사가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대상계좌에 대해 이용회사가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① 은행은 송금 등을 실행할 때 수표 또는 지불청구서 및 예금통장을 징구하지 않고 송금 등에 필요한 금액(송금수수료(별첨의 수수료표 참조), 전신료, 조작 · 커미션, 지불은행수수료, 중계은행수수료 등을 포함)을 대상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용회사가 은행에 보낸 송금지시의 취소 · 정정 · 송금등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 (반송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용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② 송금 등은 은행의 본지점 및 관계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다. 이용회사는 송금 등의 실행수단·방법(경로, 관계금융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은행에 일임한다. 송금 등의 실행 또는 송금 등에 필요한 지불을 하는 경우, 은행 및 관계금융기관은 이용회사의 지시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 및 기타 숫자에 의한 지시를 신뢰할 수 있다. 은행의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이용회사의 지시에 일치되게 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송금상대방등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용회사는 모든 손해에 관하여 은행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이용회사는 송금 서비스가 관계 당국의 법령, 규칙, 관습, 은행 및 관계 금융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회사는 송금 서비스에 있어서 송금통화가 지불지의 통화와 다를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불통화 및 환율이 관계각국의 법령, 규칙 및 은행 및 관계 금융기관이 정한 지불통화와 고시환율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동의한다.
- ④ 기본계약서 및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이 동종의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은행의 타행환거래약관 및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국송금신청조항등의 거래조건을 적용한다. 은행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 ⑤ 이용회사 또는 관련회사는 송금 등을 실행할 때 관계감독관청과 기타 공적기관, 조약, 법령, 규칙, 관습, 국제적인 규칙 또는 합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a)은행이 이용회사 또는 관련회사의 이름, 주소, 대상계좌의 계좌번호 및 기타 송금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송금 등에 추가 기재하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공하고 (b)송금수취인의 명칭, 주소, 계좌번호와 기타 송금수취 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이용회사 또는 관련회사가 은행 이외의 관계금융기관에 보유하는 대상계좌에 대해 이용회사가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① 은행 이외의 관계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상계좌로부터의 송금 등은 은행이 해당 관계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동지시를 송신함으로써 실행한다. 이용회사는 자금이동지시의 전달수단 및 방법에 대해 은행에 일임한다. 송금 등의 실행 또는 송금 등에 필요한 지불을 할 경우, 은행 및

관계금융기관은 이용회사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및 기타 숫자에 의한 지시를 신뢰할 수 있다. 은행이 이용회사의 지시에 일치되게 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금액이나 송금상대방등의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회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제 3 항에 근거한 은행의 의무는 자금이동지시를 대상계좌가 소재 하는 관계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것에 한정된다. 은행은 해당 관계금융기관 의 송금 등의 실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용회사는 송금 서비스가 관계 당국의 법령, 규칙, 관습, 은행 및 관계 금융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회사는 송금 서비스에 있어서 송금통화가 지불지의 통화와 다를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불통화 및 환율에 대해서 관계각국의 법령, 규칙 및 은행 및 관계금융기관이 정하는 지불통화및 고시환율에 따라 처리되는 것에 동의한다.

④ 기본계약서 및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은행이 같은

종류 의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은행의 타행환거래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외국송금신청조항 등의 거래조건을 적용한다.

은행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4 은행이 정하는 접수마감시각 이전에 수신된 송금서비스의 지시에 대해 은행은
지체없이 송금 등의 실행 또는 자금이동지시의 송신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이용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유무에 관계없이
송금 등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한다.

- ① 대상계좌의 이용가능한 자금이 송금 등에 필요한 금액에 부족할 경우

- ② 대상계좌의 자금에 담보권의 설정, 압류 등이 이루어져 처분이 제한
되거나 또는 금지되어 있는 경우

- ③ 송금서비스의 지시서에 은행이 정하는 조건(송금통화, 송금일, 수취은행명
등)에 기재가 누락된 경우

- ④ 송금서비스의 지시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 또는 그 내용에 모순, 결함 등이 있는 경우
- ⑤ 송금서비스의 지시가 이용회사의 수권에 근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송금 등을 실행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⑦ 송금수취인의 계좌보유은행(또는 그 지점)과 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 지점 간에 코레스 관계가 없는 경우

6 이용회사는 송금서비스의 지시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 기타사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수 없다. 다만, 해외송금에 관하여는 은행이 타행송신을 실시한 시점을 지급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회사가 송금서비스의 지시를 한 후에 실행된 송금 등의 취소를 은행에 의뢰한 경우에는 은행 소정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며, 은행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취소를 실행하기로 한다.
이용회사는 관계금융기관의 관여 등의 사유로 송금 등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의 비용이 청구되거나 또는 송금금액으로부터 차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7. 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기업조직개편시에도 송금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이용회사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은행의 기업조직개편으로 이용회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파일전송서비스)

- 1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서 파일전송을 선택하고 서비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은행은 이용회사에 파일전송기능을 통한 송금서비스 (「파일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이용회사는 파일전송기능을 통해 서울 지점이 제공하는 송금 이외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하의 『추가

서비스』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

- 1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서 송금서비스와 함께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은행은 이용회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송금수취인의 메일주소 (「통지처 메일주소」) 로 입금통지를 전자메일 (「입금통지메일」) 로 송신하는 서비스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 를 제공한다.

- 2 이용회사는 통지처 메일주소의 소유자 (「메일수취인」) 가 송금수취인의 종업원 등 개인인 경우, 이하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 ① 직접 또는 관련회사를 통하여 메일수취인에게 미리 입금통지일의 송신을 목적으로 통지처 메일주소를 은행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서면 및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을 것. (은행은 관련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이용회사는 메일수취인으로부터 통지처 메일주소의 사용정지를 요청 받은 경우, 즉시 해당 통지처 메일주소의 사용을 정지할 것.

- 3 은행은 이용회사로부터 제공되는 통지처 메일주소를 입금통지메일의 송신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4 은행은 메일수취인 및 기타 제 3 자로부터 입금통지메일발신정지의 요청을 수령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용회사에 통지하고, 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통지처 메일주소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회사는 통지처 메일주소의 사용중지를 요구받은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통지처 메일주소의 사용을 즉시 정지한다. 은행은 메일수취인 및 기타 제 3 자로부터의 발신정지 요청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당 이용회사에 대하여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전부 정지할 수 있다.

- 5 이용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통지서비스 실행에 관하여 이하의 사항을 승락한다.
 - ① 은행은 이용회사가 지정한 통지처 메일주소에 송신함으로써, 수취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② 은행은 입금통지메일의 수신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입금통지메일에 대해서는 암호 보호 및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은 이행하지 않으며, 은행은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은행은 이용회사로부터 제공된 통지처 메일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로 인해 생기는 정보누설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은행은 입금통지메일의 수취인으로부터의 조회에 대응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용회사는 자기의 책임으로 대응해야 한다.
- ⑥ 은행은 입금통지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송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⑦ 은행은 시스템 처리상의 이유로 인해 입금통지메일의 송신시각을 보증 하지 않는다.

제 5 조 (GCMS Plus 보조 도구)

- 1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서 GCMS Plus 보조 도구 (「보조 도구」) 를 선택한 경우, 은행은 이 규정의 조건에 따라 이용회사에 대하여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불능이며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락한다.
- 2 보조 도구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본계약서의 규정이 적용

된다.

제 6 조 (관련회사)

이용회사 및 은행은 이용회사가 서비스신청서에 의해 등록한 관련회사의 계좌, 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관련회사가 서비스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계좌, 정보 및 거래를 본건 서비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취급)

1 은행은 본건 서비스에 관련하여 이용회사 및 관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 (성명·소속부서·직책·연락처 전화번호·팩시밀리·메일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이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① 본건 서비스의 신청 접수 및 지속적인 거래의 관리를 위하여
- ② 본인확인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확인, 본건 서비스의 이용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 ③ 은행 내부에서의 시장조사 및 데이터 분석, 앙케이트의 실시 등에 의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연구나 개발을 위하여

- ④ 다이렉트 메일 발송 등 은행 또는 은행의 관련회사, 제휴회사의 금융
상품서비스에 관한 각종 제안을 위하여
- ⑤ 이용회사와의 계약 및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⑥ 기타 이용회사와의 거래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 이용회사 및 관련회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서면 등으로 개인
정보에 관한 본인 동의를 얻는다.

3 은행은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English Translation (for reference purposes only)

The services under the GCMS Plus Basic Agreement (the “Basic Agreement”) shall be provided by the Bank to the Customer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Terms defined in the Basic Agreement have the same respective meaning when used herein.

1. Reporting Services

1.1 If any of the following services are registered by the Application and the relevant Consents

are submitted by the Customer, the Bank shall provide to the Customer the services (the “Reporting Services”) of reporting on the Accounts and other matters as registered by the Customer:

- (1) Account Report
- (2) Inward Remittance Report
- (3) Outstanding Transaction Report
- (4) Statement
- (5) Outward Remittance Report

1.2 The Customer acknowledges that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Bank in the Reporting Services may be affected or restricted by the process in the computer system or otherwise and that the account information may not be provided on a real time basis.

1.3 The Customer shall make queries directly with the Servicing Office (and, if the information relates to the accounts and transactions of an Affiliated Company, through such Affiliated Company) with respect to any irregularities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Reporting Services.

2. Payment Services

2.1 If the Payment Services is registered by the Application and the relevant Consents are submitted by the Customer, the Bank shall provide to the Customer the services (the “Payment Services”) of money transfer/other methods of fund transfer (“Money Transfer”) between the Accounts and other accounts as registered by the Customer.

2.2 In case where the Customer utilizes the Payment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Accounts which the Customer or the Affiliated Companies maintain with the Bank,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1) The Bank is hereby authorized to debit the Accounts with the amount (including remittance charges (*cf.* the list of remittance charges to be delivered separately),

cable charges handling commissions, paying bank's charges and intermediary bank's charges) required for Money Transfer, without any check or any withdrawal slip with its bank book.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charges for the cancellation and correction of Money Transfer instructions made by the Customer to the Bank and the refund thereof (whether or not the refund is effected), which shall be borne by the Customer.

- (2) Money Transfer may be executed through the head office and branches of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e Bank is hereby authorized to decide, at its reasonable discretion, on the ways and means of executing Money Transfer (concerning the routes and the ways of Money Transfer and transmission of instructions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and other matters). In executing Money Transfer and making payments in relation thereto,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may rely on the identifying Bank Code, account number or other numerical/alphabetical/kana letter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ustomer's instruction. Unless caused by the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the Bank, the Bank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s caused to the Customer as a result of any accident relating to an amount, recipient and other matters, if the Bank executed the transaction in consistency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Customer.
- (3) The Customer agrees that the Payment Services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ayment currency and the official exchange rate determined by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In case where Money Transfer is executed in a currency other than the currency of the place where the beneficiary is situated, the Customer agrees that the currency and the exchange rate applicable to the payment to the beneficiary shall be determined by the Bank 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ustoms and practices, laws and regulations or the handling procedures of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 (4) With respect to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e Basic Agreement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Bank may apply the Terms & Conditions for On Line Fund Transfer, the Basic Provisions of Foreign Currency Deposit Transaction, the Terms & Conditions of Remittance and other rules of the Bank which the Bank generally applies to similar transactions. The Bank shall make best efforts to comply with

the same in good faith.

- (5) The Customer and Affiliated Companies (a) agree that the Bank may provide, for the purpose of Money Transfer,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the applicant of Money Transfer, including their names and addresses and the account number of the Accounts by listing the information on Money Transfer or through other methods and (b) undertake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the recipient of Money Transfer, including the name, address and account number of the recipient, if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other public bodies or pursuant to the treaties, laws, regulations, customs, practices or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agreements.

2.3 In case where the Customer utilizes the Payment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Accounts which the Customer or the Affiliated Companies maintai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other than the Bank,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1) Money Transfer from the Accounts maintaine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other than the Bank shall be executed by transmitting Money Transfer instructions by the Bank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e Bank is hereby authorized to decide, at its discretion, on the ways and means of transmitting Money Transfer instructions. In executing Money Transfer and making payments in relation thereto,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may rely on the identifying Bank Code, account number or other numerical/alphabetical/kana letter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ustomer's instruction.

If the bank processes the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er's instruction, even if there is a discrepancy in the amount or the remittance party, the Customer cannot claim compensation from the bank for the damage, unless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to the bank.

- (2) The obligations of the Bank in this Clause 2.3 shall be limited to transmitting Money Transfer instruction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with which the Accounts are maintained. The Bank shall in no case be liable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Money Transfer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 (3) The Customer agrees that related Payment Services of Money Transfer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ayment currency and the official exchange rate determined by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In case where Money Transfer is executed in a currency other than the currency of the place where the beneficiary is situated, the Customer agrees that the currency and the exchange rate applicable to the payment to the beneficiary shall be determined by the Bank 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ustoms and practices, laws and regulations or the handling procedures of the Bank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 (4) With respect to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e Basic Agreement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Bank may apply the Terms & Conditions for On Line Fund Transfer, Basic Provisions of Foreign Currency Deposit Transaction, Terms & Conditions of Remittance and other rules of the Bank which the Bank generally applies to similar transactions. The Bank shall make best efforts to comply with the same in good faith.

2.4 The Bank shall exert its best efforts to execute Money Transfer or to transmit Money Transfer instructions without delay, if the instruction for the Payment Services is received by the Bank before the cutoff time set forth by the Bank.

2.5 The Customer acknowledges that Money Transfer may not be executed, whether or not a notice is given by the Bank,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 (1) where the funds available in the Account are not sufficient for Money Transfer;
- (2) where there exists security interest created over, or attachment made against, the funds in the Account and the disposition thereof is restricted or prohibited;
- (3) where the instruction for the Payment Services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including a currency of remittance, date of remittance and the recipient bank) set forth by the Bank;
- (4) where there exists ambiguity, contradiction, omission or other defect in the instruction for the Payment Services;

- (5) where the Bank observes that the instruction for the Payment Services may not be authorized by the Customer;
- (6) where the execution of Money Transfer may be in conflict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7) where the bank (or its branch) with which the account of the recipient is maintained is not a correspondent bank of the Servicing Office with which the Account is maintained.

2.6 The Customer has no right to nullify or to cancel or to modify the Money transfer instructions due to misunderstanding or otherwise, save in the case that the Customer may withdraw the instructions pursuant to Article 14.1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before the payment takes effect; provided that the overseas remittance shall be deemed to take effect if and when the Bank effects the transmission of the instruction to the other financial institution. If the Customer requests for refund of any Money Transfer executed after the Money transfer instruction is given by the Customer, an application shall be made as set forth by the Bank, in which case the Bank shall effect the refund as prescribed by the Bank. The Customer acknowledges that cancellation and refund of Money Transfer may not be effected due to the involv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or otherwise and that fees and other costs may be charged or deducted from the funds to be transfer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2.7 The Bank shall, in principle, continue to provide the Payment Services to the Customer to whom it provides such services even in the event of the Bank's corporate reorganisation; provided, however, that if corporate reorganisation of the Bank will render it unable to provide such services to such the Customer, the Bank shall immediately provide notice thereof to such the Customer.

3. File Transfer Services

3.1 If the File Transfer is registered by the Application and the relevant Consents are submitted by the Customer, the Bank shall provide to the Customer the payment services through the file transfer function (the "File Transfer Services").

3.2 The Customer may utilize, through the file transfer function, the Services (other than the bulk money transfer) which may be provided by the Seoul Branch of the Bank.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dditional Services” shall apply to such Services.

4. Beneficiary Advice Services

4.1 If the Beneficiary Advice is registered by the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Payment Services, the Bank shall provide to the Customer the services of sending a payment advice by e-mail (the “Payment Advice E-mail”) to the recipient e-mail addresses (the “Recipient E-mail Address”) as instructed by the Customer (the “Beneficiary Advice Services”).

4.2 In case where the holder of the Recipient E-mail Address (the “E-mail Recipient”) is an individual (such as an employee of the Customer), the Customer agrees:

- (1) directly or through the Affiliated Company, to give a prior notice to the E-mail Recipient that the Recipient E-mail Address is provided to the Bank for the purpose of sending the Payment Advice E-mail and to obtain its consent in writing or otherwise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Beneficiary Advice Services are provided subject to such consent);
- (2) immediately, to suspend the use of the Recipient E-mail Address, if so requested by the E-mail Recipient.

4.3 The Bank shall not use the Recipient E-mail Address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sending the Payment Advice E-mail.

4.4 If the Bank is requested by the E-mail Recipient or any third party to suspend the Payment Advice E-mail, the Bank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ustomer thereof in writing and may request the Customer to suspend the use the Recipient E-mail Address. If requested to do so, the Customer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use of the Recipient E-mail Address. The Bank may, at its discretion, suspend the Beneficiary Advice Services as a whole, if the request to such effect is repeated by the E-mail Recipient or any other third party.

4.5 The Customer hereby acknowledges and agrees in relation to the Beneficiary Advice Services as follows:

- (1) The Bank shall send the e-mail to the Recipient E-mail Address designated by the Customer and is under no obligation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recipients.
- (2) The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confirm receipt of the Payment Advice E-mail.
- (3) The Customer acknowledges that no security measures are taken with respect to the Payment Advice E-mail (including password protection and cryptography), for which the Bank shall not be responsible.
- (4) The Bank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accident (including leakage of information) which may be caused by inaccuracy of the Recipient E-mail Address provided by the Customer.
- (5) The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deal with queries of the recipient of the Payment Advice E-mail, of which the Customer shall take care on its responsibility.
- (6) If the Payment Advice E-mail is not received, the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re-send the same.
- (7) The Customer acknowledges that the Bank may not send the Payment Advice E-mail at any particular time due to the process of the system.

5. GCMS Plus Supplemental Tool

- 5.1 If the GCMS Plus Supplemental Tool (the “Supplemental Tool”) is registered by the Application, the Bank shall be deemed to have granted the Customer a non-exclusive and non-transferable right to use the Supplemental Tool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 5.2 The Supplemental Tool forms part of the Software,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e Basic Agreement shall apply.

6. Affiliated Company

If the Company registers by the Application any Accounts,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of an Affiliated Company and the relevant Consent is submitted by such Affiliated Company, the Bank agrees to provide to the Customer the Services with respect to such Accounts,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7. Personal Information

7.1 The Bank may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section/department, title, telephone number, facsimile number and e-mail address, which identifies any particular individual) provided by the Customer and Affiliated Companies in relation to the Servic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 (1) to administer the application for, and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s;
- (2) to verify the identity of any person under the Personal Identification Act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Services;
- (3) to mak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s, including the market research and data analysis and the questionnairing to be conducted internally by the Bank;
- (4) to propose any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s of the Bank and its affiliated and other related companies, by direct mailing or otherwise;
- (5) to exercise the rights and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contracts with the Customer; and
- (6) other than the foregoing, to facilitate the transactions with the Customer.

7.2 If and when it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of a person to the Bank, each of the Customer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shall procure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such person.

7.3 The Bank may regard personal information of a person provided to the Bank as being consented to by such person.

日本語訳（以下の日本語訳は、参照目的でのみご利用下さい）

GCMS Plus 基本契約書（「基本契約書」）にもとづき銀行が利用会社に対して提供するサービスについては、本規定が適用される。基本契約書において定義された用語は、本規定においても同様の意味を有する。

第1条（照会サービス）

1 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おいて以下に記載するサービスを選択し、サービス同意書を提出した場合、銀行は、利用会社に対し、その選択に従い対象口座その他の情報について以下のサービス（「照会サービス」）を提供する。

- ① 口座情報照会サービス
- ② 被仕向送金到着・入金案内照会サービス
- ③ 取引残高照会サービス
- ④ 計算書照会サービス
- ⑤ 仕向送金計算書照会サービス

2 利用会社は、コンピューター処理上の制約その他の理由により、銀行が提供する情報の正確性が影響を受ける場合があること、および提供される口座情報が必ずしも提供時点における最新の情報ではないことを了解する。

3 利用会社は、照会サービスにより提供された情報について疑義を生じた場合、（関連会社の口座および取引にかかる情報については、当該関連会社を通じ）取引拠点に対し直接照会を行うものとする。

第2条（送金サービス）

1 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おいて送金サービスを選択し、サービス同意書を提出した場合、銀行は、利用会社に対し、その選択に従い対象口座から他の口座への送金その他の資金移動（「送金等」）にかかるサービス（「送金サービス」）を提供する。

- 2 利用会社または関連会社が銀行に保有する対象口座につき利用会社が送金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以下の規定を適用する。
- ① 銀行は、送金等の実施につき、小切手または払戻請求書および預金通帳を徴求することなく、送金等にかかる金額（送金手数料＜別途配布する手数料表参照＞、電信料、ハンドリング・コミッション、支払銀行手数料、中継銀行手数料等を含む）を対象口座より引落とすことができる。利用会社が銀行に対して送った送金指図の取消・訂正・送金等の組戻に掛かる費用（組戻が実際に行われなかった場合に生じた費用を含む）は、利用会社の負担とし、同様の取り扱いとする。
 - ② 送金等は、銀行の本支店および関係金融機関を通じて実施される。利用会社は、送金等の実施の手段・方法（経路、関係金融機関との連絡の方法等）については、銀行の合理的な判断に一任する。送金等の実施または送金等にかかる支払を行う場合、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は、利用会社の指示に含まれる銀行コード(Bank Code)及び口座番号その他アルファベット／カナ文字／数字による指示を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銀行の故意または重過失による場合を除き、銀行が利用会社の指示に従い取引を処理した場合は、金額及び送金相手等の不一致が発生した場合でも利用会社は全ての損害について銀行に補償を請求できない。
 - ③ 利用会社は、送金サービスが関係各国の法令、規則、慣習および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の定めるところに従って提供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また、利用会社は、送金サービスにおける送金通貨が支払地の通貨と異なる場合には、受取人に対する支払通貨および為替相場については、関係各国の法令、規則および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の定める支払通貨及び公示為替相場に従って取扱われることに同意する。
 - ④ 基本契約書および本規定に規定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銀行が同種の取引に一般的に適用する銀行の他行為替取引約款、外貨預金取引基本約款及び外国送金申請条項等の取引条件を適用する。銀行はそれを誠実に遂行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
 - ⑤ 利用会社または関連会社は、送金等の実施につき、関係監督官庁その他公的機関、条約、法令、規則、慣習、国際的な規制もしくは合意等の要請がある場合

には、(a)銀行が利用会社または関連会社の名前、住所、対象口座の口座番号その他送金依頼人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な情報を送金等に付記し、また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および(b)送金受取人の名称、住所、口座番号その他送金受取人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な情報を銀行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する。

3 利用会社または関連会社が銀行以外の関係金融機関に保有する対象口座につき利用会社が送金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以下の規定を適用する。

- ① 銀行以外の関係金融機関に保有されている対象口座からの送金等は、銀行が当該関係金融機関に対し資金移動指図を送信することにより行う。利用会社は、資金移動指図の伝達の手段および方法については、銀行に一任する。送金等の実施または送金等にかかる支払を行う場合、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は、利用会社の指示に含まれる銀行コード(Bank Code)及び口座番号その他アルファベット／カナ文字／数字による指示を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銀行の故意または重過失による場合を除き、銀行が利用会社の指示に従い取引を処理した場合は、金額及び送金相手等の不一致が発生した場合でも銀行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がない限り、銀行に対して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はできない。
- ② 本第3項にもとづく銀行の義務は、資金移動指図を対象口座が所在する関係金融機関に送信することに限定される。銀行は、当該関係金融機関の送金等の実施について責任を負わない。
- ③ 利用会社は、送金サービスが関係各国の法令、規則、慣習および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の定めるところに従って実施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また、利用会社は、送金サービスにおける送金通貨が支払地の通貨と異なる場合には、受取人に対する支払通貨および為替相場については、関係各国の法令、規則および銀行および関係金融機関の定める支払通貨及び公示為替相場に従って取扱われることに同意する。
- ④ 基本契約書および本規定に規定のない事項については、銀行が同種の取引に一般的に適用する銀行の他行為替取引約款、外貨預金取引基本約款及び外国送金申請条項等の取引条件を適用する。銀行はそれを誠実に遂行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

- 4 銀行が定める受付締切時刻以前に受信された送金サービスの指示については、銀行は、遅滞なく送金等の実施または送金等指図の送信を実施するため最善の努力を行う。
- 5 利用会社は、次の各号に定める場合、銀行からの通知の有無にかかわらず、送金等が実施されない場合があることを了承する。
- ① 対象口座における利用可能な資金が送金等に必要な金額に不足する場合
 - ② 対象口座における資金につき担保権の設定、差押等がなされ、処分が制限または禁止されている場合
 - ③ 送金サービスの指示書に銀行が定めた条件（送金通貨、送金日、受取銀行名等）の記載がもれている場合
 - ④ 送金サービスの指示の内容が不明瞭な場合、またはその内容に矛盾、欠落等がある場合
 - ⑤ 送金サービスの指示が利用会社の授権にもとづかない可能性があるとして銀行が認める場合
 - ⑥ 送金等を実施することが法令に抵触する可能性がある場合
 - ⑦ 送金受取人の口座保有銀行（またはその支店）と対象口座保有取引拠点との間にコルレス関係がない場合
- 6 利用会社は、送金サービスの指示について、電子金融取引法第14条第1項の規定に従って支払の効力が発生する前まで取引指示を撤回出来る場合を除き、錯誤その他の事由で無効を主張し、取消または変更を要求することは出来ない。但し、海外送金に関しては銀行が他行送信を実施した時点で支払効力が発生するものと看做す。利用会社が送金サービスの指示を行った後に実行された送金等の組戻を銀行に依頼する場合には、銀行所定の方法により申し入れ、銀行は所定の方法により組戻を行う。利用会社は、関係金融機関の関与その他の事由により、送金等の組戻が実施できない場合があることおよび関係金融機関の手数料その他の費用が請求され、または送金金額から差引かれる場合があることを了解する。

- 7 銀行は、銀行の企業組織再編が行われたとしても、原則として、送金サービスの提供を受ける利用会社に対して、当該サービスの提供を継続するものとする。但し、銀行が、銀行の企業組織再編により当該利用会社に対して当該サービスの提供ができなくなる場合、当該利用会社にその旨を直ち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 (ファイル転送サービス)

- 1 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おいてファイル転送を選択し、サービス同意書を提出した場合、銀行は、利用会社に対し、ファイル転送機能を通じた送金サービス（「ファイル転送サービス」）を提供する。
- 2 利用会社は、ファイル転送機能を通じて、ソウル支店が提供する送金以外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出来る。該当サービスの提供については「追加サービス」規定が適用される。

第4条 (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

- 1 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おいて送金サービスと併せて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を選択した場合、銀行は、利用会社の指示にもとづき送金受取人のメールアドレス（「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宛に振込通知を電子メール（「振込通知メール」）にて送信するサービス（「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を提供する。
- 2 利用会社は、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所持者（「メール受取人」）が送金受取人の従業員等の個人である場合、以下の事項を遵守することを確約する。
- ① 直接または関連会社を通じ、メール受取人に対し、あらかじめ、振込通知メールの送信を目的として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を銀行に提供する旨を通知し、書面その他の方法により同意を得ること（銀行は、かかる同意が得られたことを前提に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 ② 利用会社は、メール受取人から、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使用の停止を求められた場合、直ちに当該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使用を停止すること。
- 3 銀行は、利用会社により提供された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を振込通知メールの送信以外に利用しない。

- 4 銀行は、メール受取人その他の第三者より、振込通知メール発信停止の要請を受領した場合、遅滞なく書面により利用会社に通知し、利用会社に対し当該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使用中止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利用会社は、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使用中止を求められた場合、理由の如何を問わず当該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の使用を直ちに停止する。銀行は、メール受取人その他の第三者からの発信停止要請が止まらない場合、自らの判断で当該利用会社に対する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を全て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
- 5 利用会社は、受取人宛通知サービスの実施に関し、以下の事項を了承する。
- ① 銀行は、利用会社が指定した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に送信するものとし、受取人の同一性につき確認する義務を負わない。
 - ② 銀行は、振込通知メールの受信を確認する義務を負わない。
 - ③ 振込通知メールについては、パスワード保護および暗号化等のセキュリティ対策は行われず、銀行は、この点に関し責任を負わない。
 - ④ 銀行は、利用会社により提供された通知先メールアドレスが正確でない場合においても、これにより生じる情報漏えい等の事故につき、責任を負わない。
 - ⑤ 銀行は、振込通知メールの受取人からの照会に対応する義務を負わず、利用会社は、自己の責任において対応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⑥ 銀行は、振込通知メールが受信されない場合においても、再送信する義務を負わない。
 - ⑦ 銀行は、システム処理上の理由により、振込通知メールの送信時刻を保証するものではない。

第5条 (GCMS Plus 補助ツール)

- 1 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おいて GCMS Plus 補助ツール（「補助ツール」）を選択した場合、銀行は、本規定の条件に従い、利用会社に対し、補助ツールを使用する譲渡不能かつ非独占的使用権を許諾する。

- 2 補助ツールは、本件ソフトウェアの一部を構成し、基本契約書の規定が適用される。

第6条 (関連会社)

利用会社および銀行は、利用会社がサービス申込書により登録した関連会社の口座、情報および取引に対し関連会社がサービス同意書を提出した場合、かかる口座、情報および取引を本件サービスの対象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7条 (個人情報の取扱い)

- 1 銀行は、本件サービスに関連して利用会社および関連会社から提供を受けた個人情報（氏名・所属部署・役職・連絡先電話番号・ファクシミリ・メールアドレスなど、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を以下の目的のために利用できるものとする。
- ① 本件サービスの申込受付および継続的な取引における管理のため。
 - ② 本人確認法にもとづく本人の確認、本件サービスの利用資格などの確認のため。
 - ③ 銀行内部における市場調査ならびにデータ分析やアンケートの実施などによる金融商品やサービスの研究や開発のため。
 - ④ ダイレクトメールの発送など、銀行または銀行の関連会社、提携会社の金融商品やサービスに関する各種ご提案のため。
 - ⑤ 利用会社との契約や法律にもとづく権利の行使や義務の履行のため。
 - ⑥ その他、利用会社との取引を適切かつ円滑に履行するため。
- 2 利用会社および関連会社は、個人情報の提供にあたり、事前に書面等で個人情報の本人の同意を得るものとする。
- 3 銀行は、提供を受けた個人情報については、本人の同意を得たものとして取扱う

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Ⅱ. 추가 서비스 (Additional Services/追加サービス)

이하의 규정이 GCMS Plus 서비스규정으로 추가 적용된다.

제 1 조 (잔액증명 발행 서비스)

1. 잔액증명 발행 서비스란, 본 규정에서 정한 파일 전송 서비스의 파일 전송 기능을 통하여, 잔액증명의 발행을 행하는 서비스(「잔액증명발행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회사는, 파일전송 기능을 통하여, 은행 소정의 잔액 증명발행 의뢰서 (처리의뢰 데이터) 를 은행에 송신한다.
3. 은행은, 은행이 객장에 고시하는 수수료 일람표에서 정한, 잔액증명의 발행에 드는 비용(수수료)(별첨 수수료표 참조)에 대하여, 수표 또는 지불 청구서 및 예금통장을 징구하는 것 없이, 이용회사가 처리의뢰데이터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 (당점에

개설된 계좌에 한함)로부터 인출할 수 있다.

4. 이용회사로 부터의 잔액증명발행서비스의 지시는 은행이 별도 정하는 접수마감

시각(현행 16:00)이전에 실행 완료되어야 한다.

은행은 당일 마감 시간 이전에 접수된 잔액증명발행의뢰에 대해서는, 익영업일의 원본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5. 은행은, 이용회사로 부터의 잔액증명의 발행에 따른 비용(수수료) 지불이 완료됨을

확인한 후에 의뢰받은 잔액증명서의 발행을 행한다.

6. 이용회사는, 파일전송기능을 통하여 은행에 송부한 당해 의뢰에 대하여 취소 또는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을 취하고, 은행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소정 양식인 변경/수정관련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English Translation (for reference purposes only)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dditionally as part of the GCMS Plus Terms and Conditions.

1. Balance Reporting Services

1.1 In the Balance Reporting Services, the Bank shall provide to the Customer through the file

transfer function of the File Transfer Services provided for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the services relating to the issuance of balance report (the “Balance Reporting Services”).

- 1.2 The Customer shall transfer to the Bank the data (the “Data”) requesting the issuance of balance report through the file transfer function and in the form set forth by the Bank.
- 1.3 The Bank is hereby authorized to debit from the account (which shall be an account maintained with the Seoul Branch of the Bank) designated in the Data, without any check or any withdrawal slip with its bank book, fees for the issuance of balance report (*cf.* the list of charges to be delivered separately) as displayed at the counter of the Bank.
- 1.4 The instruction for the Balance Reporting Services shall be received by the Bank before the cutoff time (currently 16:00) set forth by the Bank. If the instruction for the Balance Reporting Services is received before the cutoff time, the Bank shall issue a balance report (original) as requested by such instruction on the next following business day.
- 1.5 The Bank shall issue a balance report upon confirming receipt of the fees for the issuance of balance report.
- 1.6 If the Customer requests for the cancellation or correction of the instruction for the Balance Reporting Services after the Data is received by the Bank, the Customer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Bank thereof and shall, as required by the Bank, execute and deliver to the Bank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 correction as prescribed by the Bank.

日本語訳（以下の日本語訳は、参照目的でのみご利用下さい）

以下の規定が GCMS Plus サービス規定として追加して適用される。

第1条（残高証明発行サービス）

- 1 残高証明発行サービスとは、本規定で定めたファイル転送サービスのファイル転送機能を通じて残高証明の発行を行うサービス（「残高証明発行サービス」）をいう。
- 2 利用会社は、ファイル転送機能を通じて、銀行所定の残高証明発行依頼書（「処理依

頼データJ) を銀行に送信する。

3. 銀行は、銀行が窓口に掲示する手数料一覧表に定める残高証明の発行にかかる費用（手数料）＜別途配布する手数料表参照＞につき、小切手または払戻請求書および預金通帳を徴求することなく、利用会社が処理依頼データにおいて指定する口座（ソウル支店に開設された口座に限る）より引落とすことができる。
4. 利用会社よりの残高証明発行サービスの指示は、銀行が別途定める受付締切時刻(現行 16:00)以前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銀行は、受付締切時刻以前に受信された残高証明発行サービスの指示については、残高証明（原本）を翌営業日に発行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5. 銀行は、利用会社より残高証明発行の費用（手数料）の支払が完了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後、かかる残高証明書の発行を行うものとする。
6. 利用会社は、ファイル転送機能を通じて銀行に送付した当該依頼について取消または修正を希望する場合、即時に銀行に連絡を取り、銀行の指示に従い、銀行所定の様式による変更／修正関連申請書を書面にて作成し、提出する。